

영등포구의회
제21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
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10. 2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58호로 2019년 10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분야 위원의 확대 및 위상을 높이고, 조례에 포상 규정을 명시하여 업무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 인원 확대(안 제9조제1항)

- 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 인원을 ‘25명 이내’에서 ‘30명 이내’로 변경

나. 공동의장 직위 신설 및 공동 부의장 직위 폐지(안 제9조제2항)

- 기존 구청장 단독 의장 직위를 구청장과 선출된 민간 위원의 공동의장 직위로 변경
- 부구청장과 선출된 민간위원의 공동 부의장 직위는 폐지

다. 당연직 위원에 구청장 추가 명시(안 제9조제3항)

-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, 관련 국장 및 협치조정관으로 함
- 라.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원칙 명시(안 제9조제4항)
 -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 신설
- 마. 포상규정 신설(안 제26조)
 - 협치관련 유공자(주민, 공무원) 포상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※ 2016. 9. 29. 제6317로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」를 참고할 수 있음.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1. ~ 10. 1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협치기반을 강화하고 민간협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협치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,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9조에서는 협치회의 위원 구성을 의장1명, 부의장2명을 포함한 25명에서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고, 구청장을 공동의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6조에서는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,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
○ 검토결과,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통치(Collaborative Governance)를 의미하는 협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, 공동의 통치,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의장 및 협치회의 위원 수 확대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,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, 또한 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구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